	(앞쪽)
승강기 운행정지	
이 승강기는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50조제2항에 따라 운행을 정지합니	니다.
상호(건물명): 승강기보호:	
운행정지 기간:	
운행정지 사유:	
년 월 일	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	
시장・군수・구청장	
1 HIEL- 1 2LAU	

1. 바탕: 노란색 2. 글자: 검은색 3. 사선: 붉은색

4. 크기: 320mm × 220mm 5. 종이질: 백상지(150g/m²)

(뒤쪽)

[안 내]

이 "승강기 운행정지 표지"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, 발급받은 즉시 붙이시기 바랍니다.